

#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유인애 의원)

의안 번호	41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16. 6. 3.

공동발의자: 유인애, 이정식, 김명숙,  
장동우, 김영준, 한동진,  
구본승

## 1. 제안이유

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“재위탁”과 “재계약” 용어의 정의를 상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(조례 제명 외)

나.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신설

(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,  
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조  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##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“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행정참여기회를”을 “행정참여 기회를”로 한다.

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5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관계 법령

### □ 정부조직법

제6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.

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.

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3조(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,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(이하 "행정권한"이라 한다)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, 다른 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.

## □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4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재계약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